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56
----------	-----

2019년 8월 30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8월 30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윤종 국장)

- 가. 제안이유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변지역 오염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하여 난지도 매립지에 조성된 월드컵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재계약)을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위탁사무명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2호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은 2002년부터 3년 주기로 계약하고 있으며, 6차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위탁운영 하고 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의 유일한 수요처로 수탁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6차 위탁시 공개모집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단독입찰하여 2회 유찰되었으며, 현재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위탁 운영중임.
- 따라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매립가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현장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위탁 사무의 범위

- 매립가스 포집·이송·정제·소각 등 관련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개량
- 매립가스포집공·관로 등의 유량, 온도, 압력, 매립가스 성상과 매립가스 표면발산, 감지정의 모니터링
-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 물품의 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기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번지 일대
- 운영일자 : 2002.02.01.~ 현재
- 시설규모
 - 쓰레기매립량 : 91,972천 m^3 , 매립면적 : 2.720천 m^2
 - 포집공 106공, 가스이송관로 14km, 송풍기, 정제기, 소각기 등

5)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2.1. ~ 2023.1.31.)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92백만원('20년)
- 산출근거
 - 비정산비(인건비등) 742백만원, 정산비(시설유지보수비) 150백만원

8)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19년 7월 22일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제1항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6567호, 2017. 7. 13〉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재 효)

가. 개요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되어온 시설로,
- 본 동의안은 2017년 7월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6567호, 2017. 7. 13>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시설 현황

- 본 시설은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대 월드컵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난지도 매립지(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으는 106개의 가스 포집공과 14.1km의 이송관로, 송풍기, 스크리버, 소각기 2대 등의 시설이 위탁관리 대상임.
 - 위탁의 내용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유지관리, 포집 및 처리시설의 보수, 매립가스 온도, 압력 등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함.

- 난지도 매립지는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도록 최초 조성시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부터 3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본 시설은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

2) 위탁업체 현황

-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3년단위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최근계약: 2017. 2. 1~ 2020. 1.31)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자원회수시설, 화력발전소 등의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중앙지사)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폐열 및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상암동 일대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이상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 2017년 계약된 본 계약은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공모하였으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되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시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음.
- 민간위탁 시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종합성과평가 결과 74.55점 이었으며, 지난 7월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판정되었음.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20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참고)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계	사업인프라 (22)	사업활동 (25)	사업성과 (43)	지도점검 이행노력 (5)	만족도 제고노력 (5)
74.55	17.13	19.9	29.27	4.25	4

3) 민간위탁 재계약 타당성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는 시설 설치 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대형 매립지 운영경험, 매립가스 사용, 사고발생 시 수습능력을 감안하면 적정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매립 종료 후 20여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매립가스 포집량 대비 열 생산량, 매립가스 시설물 가동율 등의 사업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임.

참고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1) 종합점수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특점
공통 사무 평가	1. 사업인프라	1-1. 조직 및 인력 운영	5.00점	-	3.94점
		1-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50점	2.00점
		1-1-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점	1.94점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5.00점	-	3.95점
		1-2-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3.00점	2.40점
		1-2-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점	1.55점
		1-3. 사회적 가치 기여	12.00점	-	9.24점
		1-3-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00점	5.43점
		1-3-2. 사회적 기업 등 돌봄구애 노력 및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		2.50점	2.00점
	2. 사업활동	2-1. 사업계획 집행수준	13.00점	-	10.30점
		2-1-1. 사업계획의 적정성		4.00점	3.10점
		2-1-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3.00점	2.40점
		2-2-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3.00점	2.40점
		2-2-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3.00점	2.40점	
2-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12.00점	-	9.60점	
2-2-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6.00점		5.10점		
2-2-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6.00점	4.50점			
개별 사무 평가	3. 사업성과	3-1. 사업성과 평가결과(합계)	40.00점	-	26.79점
		3-1-1. 매립가스 포집 운영실적	15.00점	-	9.94점
		①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3.00점	2.18점
		②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3.00점	2.48점
		③ 매립가스 포집량 대비 열 생산량		3.00점	1.72점
		④ 매립가스 시설물 가동률		3.00점	0.56점
		⑤ 매립지 매립가스 성분분석	3.00점	3.00점	
		3-1-2. 연간 주요사업계획 달성률	10.00점	-	9.10점
		①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2.00점	1.45점
		②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2.00점	1.65점
		③ 연간 주요사업계획 달성률	6.00점	6.00점	
		3-1-3. 설비 효율화에 따른 전력비 절감실적	15.00점	-	7.75점
		①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3.00점	2.25점
②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3.00점	2.78점			
③ 설비 효율화에 따른 전력비 절감실적	9.00점	2.72점			
3-2.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합계)	3.00점	-	2.48점		
개별 사무 평가	4. 지도점검 이행노력	4.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결과(합계)	5.00점	-	4.25점
		4-1. 지도점검 이행률		2.50점	2.50점
		4-2. 지도점검 이행노력		2.50점	1.75점
사용자 만족도 평가	5. 만족도 제고노력	5. 만족도 제고 노력	5.00점	-	4.00점
		5-1.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점	4.00점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특점
감점사례		1. 임금체불(사전협의원 임금미지급), 세금체납			
		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3. 협약사항 위반(제 3자 위탁 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4.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취득			
		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합계				74.55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56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 나.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및 침출수를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변지역 오염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하여 난지도 매립지에 조성된 월드컵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재계약)을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2호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은 2002년부터 3년주기로 6차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위탁운영 하였음.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의 유일한 수요처로 수탁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제6차 위탁시 공개모집하였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만 단독입찰하여 2회 유찰되었는 바, 한국지역난방공사외 위탁 업체가 없음.
- 따라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매립가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운영 경험이 많은 한국 지역난방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의 범위

- 매립가스 포집·이송·정제·소각 등 관련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개량
- 매립가스포집공·관로 등의 유량, 온도, 압력, 매립가스 성상과 매립가스 표면발산, 감지정의 모니터링
-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 물품의 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기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번지 일대
- 운영일자 : 2002.02.01.~ 현재
- 시설규모
 - 쓰레기매립량 : 91,972천 m^3 , 매립면적 : 2.720천 m^2
 - 포집공 106공, 가스이송관로 14km, 송풍기, 정제기, 소각기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2.1. ~ 2023.1.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92백만원('20년)

○ 산출근거

- 비정산비(인건비등) 742백만원, 정산비(시설유지보수비) 150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제1항

○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
4. 매립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적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